

튀니지아·리비아 간의 大陸棚에 關한 事件

李 相 晁*

序

國際司法裁判所가 1982年 2月 24日 判決한 튀니지아·리비아 간의 大陸棚에 關한 事件⁽¹⁾은, 第三次 國際聯合 海洋法會議에서 採擇된 大陸棚의 새로운 概念과 海洋境界線 劃定에 關한 새로운 傾向을 反影하는 것으로, 1969年 北海大陸棚事件⁽²⁾과 여러가지로 論旨가 다르다. 以下에서 同事件의 事實과 爭點을 설명하고 判決 要旨를 分析한 다음 이에 대한 評釋을 하고자 한다.

I. 事 實

地中海에 面한 아프리카 北端 中央 部分에 位置한 隣接國인 리비아와 튀니지아는 1951年과 1956年에 各各 獨立한 以來 回教 國家 간의 善隣 友好 關係를 다져 왔으나, 隣接 海洋의 石油 開發의 重要性이 增大함에 따라, 隣接 大陸棚에 對한 見解를 달리하게 되었다. 튀니지아와 리비아의 海岸線은 넓은 凹字 모양으로 기대한 灣을 形成하고 있으며, 兩國 간의 國境線은 거의 北向으로 달리다가 凹字의 兩면의 서쪽 구석으로부터 좁 못 미친 곳에서 끝난다. 리비아는 國境線이 대체로 北向인 점을 들어 大陸棚의 境界線도 北上해야 한다고 主張하고⁽³⁾, 튀니지아는 凹字의 서쪽 면에 대체로 位置하고 있어, 海岸의 대부분이 동쪽을

* 法學博士(하버드),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專任講師

- (1)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1982] I.C.J. Rep. 3. 裁判部는 Elias, Foster, Gros, Lachs, Morozov, Nagendra Singh, Mosler, Oda, Ago, Sette-Camara, El-Khani, Schwebel 判事들과, *ad hoc* 판사로 Tunisia가 選定한 Sweden 出신의 Evensen 判事와 Libya가 選定한 Italy 胎生의 Jiménez de Aréchaga判事로 構成되었다. 判決文에 Evensen, Foster, Gros, Oda 判事が 反對하고, 나머지 五명의 判事が 贊成하였다. 그리고, Ago, Schwebel, Jiménez de Aréchaga 判事が 個別見解를 提出하였으며, Gros, Oda, Evensen 判事が 反對見解를 陳述하였다.
- (2)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1969] I.C.J. Rep. 3. 또한, U.S. Dep't of State, Office of the Geographer, Limits in the Seas, No. 10(Revised)에 本件의 判決後에 當事國들이 締結한 條約과, 詳細한 地圖 및 地理學的 分析을 參照.
- (3) Memorial Submitted by the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 at 70(May 30, 1980), *reprinted in* [1982] I.C.J. Pleadings... [以下 Libyan Memorial이라고 引用].

向하고 있으므로, 大陸棚의 境界線을 리비아쪽으로 기울게 그으려고 여러가지 異說을 내놓았다. (4)

튀니지아가 1967년에, 그리고 리비아가 그 이듬해에 租鑛區域을 設定함에 따라 紛爭이 激化되자, 兩國은 協商으로 이를 解決하기 위해 온갖 努力을 기울였으나, 모두 水泡로 돌아갔다. 1977년 리비아가 武裝船의 警備下에 單獨 試錐에 들어가기에 이르자, 弱小國인 튀니지아는 그 해 5월 27일에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와 事務局에 이 事實을 通告하고, 이어서 아랍聯盟과 아프리카統合機構에도 이를 알리고 協調를 要請했다. 튀니지아의 이러한 外交의 努力은 效果를 거두어, 1977년 6월 2일 리비아는 協商과 仲裁을 통해 이 問題를 解決하겠다고 宣言하였다. 兩國 代表는 아랍聯盟 事務局總長이 지켜보는 가운데 6월 7일 會談을 開始하여, 시를 후에는 이 事件을 國際司法裁判所에 付託하기로 合意하는 特別協定에 調印하였다. (5)

兩當事國은 同 特別協定 第1條에서 隣接 大陸棚의 境界를 劃定하는데 適用할, 同 海域에 있어서의 特殊한 關係事情을 考慮한 衡平의 原理와, 第三次 國際聯合 海洋法會議의 最近의 傾向을 反影할 國際法의 原理와 原則이 무엇인가를 묻고, 아울러 判決이 내려진 후에 兩國의 專門家들이 이 原理와 原則을 適用하여, 하등 어려움이 없이 同 海域을 劃定할 수 있도록 實際의 方式을 提示해 줄 것을 付託하였다. (6) 이것은 北海大陸棚事件의 當事國인 西도이취란트·덴마크·네덜란드가 1967년 特別協定에서 境界劃定에 關한 原理와 原則을 要請한 것이라든지, (7) 英國과 프랑스가 1975년 大陸棚 仲裁裁判에 關한 協定에서 裁判

(4) Memorial of Tunisia, at 197 *et seq.* (May 30, 1980), *reprinted in* [1982] I.C.J. Pleadings... [以下 Tunisian Memorial이라고 引用].

(5) The Special Agreement Relating to the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signed at Tunis on June 10, 1977, *reprinted in* 18 Int'l Legal Mats. 51 (1979). 또한 [1982] I.C.J. Rep. 3, 21-24에 Tunisia와 Libya의 약간 다른 英譯本 參照. 그리고 또한 Tunisia Memorial, para. 1.41 參照.

(6) Libya의 英譯本の 裁判所에 付託한 內容은 :

What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may be applied for the delimitation of the area of the continental shelf appertaining to the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 and to the area of the continental shelf appertaining to the Republic of Tunisia, and the Court shall take its decision according to equitable principles, and the relevant circumstances which characterize the area, as well as the new accepted trends in the Third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Also, the Court is further requested to clarify the practical method for th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and rules in this specific situation, so as to enable the experts of the two countries to delimit these areas without any difficulties. [1982] I.C.J. Rep. Art. 1 參照.

리비아는 practical method라 譯한 데 대하여, 튀니지아는 practical way라 하였으나, 裁判所는 이 點에 關하여 基本的인 差異가 없다고 하였다. [1982] I.C.J. para. 29 參照.

(7)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Denmark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igned at Bonn, Feb. 2, 1967, Art. 1, Cited in [1969] I.C.J. Rep. 3, at 6.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所가 이에 境界線을 그어 주도록 要請한 것과 對照를 이룬다.⁽⁸⁾ 原理와 原則만을 要求하는 경우에는, 劃定에 關한 再 協商이 어려울 수 있고, 裁判所가 境界線을 긋는 경우, 技術的인 誤謬가 생길지 모른다는 憂慮에서 두가지 方式을 調和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II. 爭 點

國家間 海洋 境界線 紛爭에서는 대개의 경우, 한 當事國이 等距離線을 主張하면 다른 當事國이 “特別한 事情”을 내세워 等距離線의 不合理性을 主張하고, 衡平의 原理에 따라 等距離線의 苛酷性의 緩和를 要求하거나, 아니면 이와 다른 原則 또는 方式을 主張하는 것이 通例이나,⁽⁹⁾ 이번 튀니지아·리비아 事件에서는 兩 當事國이 共히 等距離線을 排斥하고, 諸般 關係事情을 考慮하여 衡平의 原理에 따라 大陸棚이 劃定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兩 當事國은 衡平의 原理를 自然的 延長論과 關聯지어 取扱하고 있으나, 무엇이 衡平의 原理인가에 對해서는 說得力 있는 理論 展開를 效果的으로 하지 못한 것 같다. 튀니지아에 의하면 衡平의 原理란 넓은 意味의 衡平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國土의 自然的 延長을 가장 잘 反影하는 公平한 劃定을 意味하는 것이라 하며, 衡平의 機能이란 特定한 地形의 事情下에서, 諸般 關係事情을 充實히 反影하여 衡平을 기하는 것을 意味한다고 한다.⁽¹⁰⁾ 리비아에 의하면, 自然的 延長論을 效果的으로 나타내는 劃定이 當事國의 固有한 法的 權利를 尊重하는 것이며, 그러한 權利를 主張하는 것이 衡平의 原理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¹¹⁾

兩 當事國이 이와 같이 共히 自然的 延長論에 基礎하고 있으나, 그 概念과 適用에 있어서 상당한 差異가 있다. 튀니지아는 동쪽으로 緩慢하게 傾斜를 이루면서 뻗어 나간 海底 地形에 主眼點을 두고 海底 山脈等을 따라 劃定할 것을 主張하려는 데 대해,⁽¹²⁾ 리비아는 海洋 地質의 歷史的인 形成 過程을 들어 隣接 海域이 아프리카 大陸의 自然的 延長이라 說明하면서, 海洋 境界線은 南北 方向으로 뻗은 陸地 境界線을 따라 正北으로 그어져야 한다고 力說한다.⁽¹³⁾

Netherlands, Feb. 2, 1967, Art. 1 도 同旨.

(8)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the Northern Ireland and the French Republic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Decision of 30 June 1977, Command Paper 7438 (1979), reproduced in 18 Int'l Legal Mats. 397, 400 (1979).

(9) 例를 들면, 北海大陸棚事件에서 덴마크와 네델란드가 等距離線을 主張한 데 對하여, 도이취란트 聯邦共和國이 衡平의 原理를 내세운 것이라든지, 英國·프랑스 間의 大陸棚 仲裁裁判에서 一部 紛爭 海域에 關해 英國은 等距離線을, 프랑스는 衡平의 原理를 各各 主張하였다. 現在 國際 司法裁判所에 係爭中인 美國·캐나다 間의 메인灣 海洋境界事件에서도 캐나다는 等距離線을, 美國은 衡平의 原則을 各各 固守하고 있다.

(10) Tunisian Memorial, paras. 7.07-7.08.

(11) Libyan Memorial, para. 97.

(12) 튀니지아에 의하면, 自國이 面한 海底는 단지 領土의 自然的 延長일 뿐만 아니라, “沈降한 튀니지아”라고 한다. Tunisian Memorial, paras. 8.11-8.19.

(13) 리비아는 地質學的인 데 重點을 두고 있으나, 地形學的인 面에서도 岩石學 등에 基礎하여 튀니지아에 反證을 들고 있다. Libyan Memorial, paras. 61-68, 74.

兩當事國은 共히 衡平의 原則에 따라 境界 劃定을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면서도, 劃定에 考慮되어야 할 諸般 關係事情에 관해서는 상당한 見解 差異를 보이고 있다. 튀니지아는 自國의 東海岸이 屈曲이 많고, 크고 작은 섬과 干出地가 많이 있어 自國의 內水海域을 이룬다는 事實과 튀니지아의 大陸棚이 東西 方向인데 비해, 리비아의 경우는 北東·南西方이므로 튀니지아의 大陸棚을 地形學的으로 識別해낼 수 있다는 事實 및 이태리, 말타 등의 對岸國이 가까이 存在하고, 리비아와 튀니지아가 特殊한 角度로 隣接해 있어 大陸棚을 조 금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事實을 들었다.⁽¹⁴⁾ 리비아는 大陸棚의 自然的 延長의 方向은 一般的으로 地形學的 내지 地質學的인 면에서 決定되어야 하며, 公平한 劃定을 위해서는 低潮線밖의 全體 海底 및 그 下層土를 考慮에 넣어야 한다고 하고 튀니지아가 力說하는 海底의 地形學的인 事實을 否認하였다.⁽¹⁵⁾

實際적으로 境界線을 劃定하는 問題에 關하여 튀니지아는 몇가지 選擇的인 方式을 提示하였다. 그 하나는 1904년부터 認定되어 왔다는 45°角度的 直線을 國境線 終點에서 水深 50m까지 그어 그 以東의 漁業權이 保護되도록 하고 全 海域을 이룬바 識別이 可能하다는 海底 山脈 또는 海溝등을 따라 劃定하거나,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直線으로 劃定한다는 것이다.⁽¹⁶⁾ 다음으로, 튀니지아 海岸의 一般的인 方向을 나타내는 直線과 리비아 海岸의 一般的인 方向을 나타내는 直線을 各各 가베스灣의 서쪽 구석에서 긋고, 이 두 直線을 半分하는 直線을 그은 다음, 이 半分 直線을 國境線 終點으로 나란히 옮겨서, 大陸棚의 境界線으로 삼는다는 것이다.⁽¹⁷⁾ 끝으로, 兩國 海岸에 對應되는 基點을 選擇하고 各國의 基點

(14) 튀니지아는 老대한 Memorial의 상당한 部分을 兩國의 事實 關係, 沿岸海에 있어서의 定着漁業에 關한 歷史的인 權原, 地形學的 내지 리비아 및 튀니지아 領土의 自然的 延長 등을 詳細히 說明하고, 이들이 가지는 境界劃定에 適用된 法的 意味를 強調하였다. Tunisian Memorial, paras. 3.01-3.51, 4.01-4.104, 5.01-5.84, 8.01-8.31 參照.

(15) Libyan Memorial, paras. 61-68, 74; Counter-Memorial Submitted by the 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 paras. 286-362 (Feb. 2, 1981) 各各 參照 [以下 Libyan Counter-Memorial이라고 引用].

(16) 1904年 12月 31日, 당시의 프랑스 占領 當局의 訓示 事項에 들어 있는 線은 國境線 終點인 라스 아이디르에서 北東쪽으로 50m 水深까지 엮고, 그 直線의 西쪽을 튀니지아의 漁撈監視水域으로 設定하였다. 1951年 7月 26日에는 이 直線이 라스 아이디르에 있는 國境線 終點에서 45° 角을 確認한 勅令을 發表하고 그 以西에 프랑스 또는 튀니지아 國旗를 단 漁船만이 漁撈에 從事할 수 있는 漁業水域을 設定하였다. 튀니지아가 獨立한 다음에도, 1963年 12月 30日 法律 第 63-49號와, 1973年 8月 2日 法律 第 73-49號로 各各 上記 45° 線을 再 確認하였다. Tunisian Memorial, paras. 4.76-4.88 & Submissions. 튀니지아는 上記 漁業水域이 完全히 自國에 속하게 하기 위해, 國境線終點에서 지라(Zira) 海底山脈쪽으로 100m 等深線까지 直線을 긋고, 지라 海底山脈을 따라 200m 等深線까지 긋고, 이어서 주와라(Zuwarah) 海底山脈을 따라 300m 等深線까지 간 다음, 300m 等深線을 건너 뛰어 멜리타 뱅크(Melita Bank)로 간다는 것이다. Tunisian Memorial, para. 9.06 參照. 또한 選擇의 理由로 國境線 終點에서 이오니아 深海底(Ionian Abyssal Plain)로 直線을 그어도 이와 비슷한 結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Tunisian Memorial, para. 9.09 參照. 이 線은 國境線 終點에서 正北으로부터 약 64°가 된다.

(17) 이러한 튀니지아의 發想은 리비아의 海岸線이 거의 直線이며, 튀니지아의 가베스灣 直線基線과 거의 直角을 이룬다는 點에 基礎하고 있다. 튀니지아에 의하면, 이 方法은 等距離線과 類似的한 것이라 한다. Tunisian Memorial, paras. 9.18-9.27.

과 基點 사이의 距離를 比較하여 이 比例에 따라 角度를 나누어 境界線을 한 토막씩 정해 간다는 것이다.⁽¹⁸⁾ 이러한 튀니지의 방식은 海岸線의 一般의인 方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結果가 다르며, 基點을 兩國 海岸에서 選擇하는 데에도 여러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리비아는 처음에는 國境線 終點에서 正北을 向하는 直線을 主張하였으나,⁽¹⁹⁾ 후에는 이를 고쳐서 튀니지의 海岸의 基線이 顯著히 方向을 轉換하는 點에서 튀니지 海岸의 一般의인 方向을 따라 北東方向으로 기울여 劃定할 수 있다고 提案하였다.⁽²⁰⁾

III. 判 旨

裁判所는 兩 當事國의 北海大陸棚事件에 依存하는 論理 展開에 注目하고, 그 당시 裁判所가 提示했던 네 가지 要因, 즉 領土의 自然的 延長, 海岸線의 屈曲, 海岸線의 길이 및 資源의 分布度를 解釋하고 適用하는 데 따라 顯著히 다른 結果가 나올 수 있음을 說明하고, 그 중에 특히 當事國이 共同 依存하고 있는 自然的 延長論을 批判하였다.⁽²¹⁾ 裁判所는 大陸棚의 概念이 비록 地質學的인 側面에서 出發하였다 하더라도, 1958年 大陸棚에 關한 協約 第1條의 概念規定 中에 開發可能性 있는 海域까지라는 文句가 덧붙혀지므로써, 그 法的 概念이 地質學的인 側面에만 基礎한 것이 아니라 事實이 分明하였음을 想起시키고,⁽²²⁾ 더구나 第三次 海洋法 會議에서는 領海의 基線에서 200마일까지는 無條件 大陸棚이 며, 그 以遠의 海域도 水成岩의 두께가 基線에서의 距離의 1% 以上 되는 곳이 基線으로부터 350마일 또는 水深 2,500m 되는 곳으로부터 100마일까지도 大陸棚으로 認定받게 된 것

(18) 튀니지의 이러한 提議는 “매우 不規則한 海岸線을 좀 더 眞正한 意味의 配分으로”라는 데 基礎를 두고 있으나, 이 角度比例配分 方式으로 面積의 比例配分이 얼마나 正確하게 實現되는지는 疑問이다. Tunisian Memorial, paras. 9.28-9.35.

(19) 리비아는 아프리카 大陸의 自然的 延長의 科學的인 證明可能性에 따라 大陸棚은 正北으로 向하고 있으며, Tunisia의 地質은 리비아의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한다. 또한 國境線의 方向이 正北이므로 더욱이 正北으로 向하는 直線이 妥當하다고 한다.

Libyan Memorial, paras. 110-120.

(20) 리비아가 이와 같이 從前의 態度를 바꾼 것은 튀니지의 가베스灣의 海岸이 거의 直角을 이루고 있어 正北의 直線을 固執할 경우에 自國의 正北論이 說得力이 적다고 判斷했기 때문인 것 같다. 北東으로 方向을 바꾼 가베스灣 北東 海岸의 一般의인 方向을 따라 正北線을 나란히 移動하여 國境線終點에서 北上한 線의 마주치는 點에서 北東으로 方向을 轉換시킨 것은 튀니지의 海岸線 角度 移轉 方式을 部分的으로 받아들인 것이라 볼 수 있다. Libyan Counter-Memorial, paras. 500-505.

(21) [1982] I.C.J. Rep. 3, paras. 38, *et seq.* 兩國이 다같이 自然的 延長論에 基礎하고 있으나, 地形, 地質, 地理의 特別히 이와 關聯된 衡平의 考慮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리비아는 적어도 本件에 關한 限 自然的 延長은 地質學的의 標準에 따른 科學的인 事實에 基礎하여 決定될 問題이지, 衡平의 原理로 法的 概念의 自然的 延長論에 根據하여 所屬 大陸棚을 識別해 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自然的 延長에 의한 劃定은 必然的으로 衡平의 原理에 맞다는 것이다. 이에 比較하여 튀니지는 自然的 延長과 衡平 사이에는 必然的인 矛盾이 없으며 特定한 地理의 狀況에서 衡平의 原理에 맞게 劃定하는 것이야말로 自然的 延長을 識別해내는 過程이라고 맞췄다. *Id.* para. 39.

(22)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499 UNTS 33, 15 UST 471, TIAS No. 5578.

은, 새로운 大陸棚의 概念에는 地質學的인 側面뿐만 아니라 陸地로부터의 距離를 重要한 要素로 삼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²³⁾ 따라서 裁判所는 大陸棚을 地質學的 또는 地 形學的 側面에서만 把握하려는 것이 妥當하지 않음을 밝히고, 科學的으로 大陸棚이 어느 나라에 屬하는지 밝힐 수 있다는 兩 當事國의 主張을 排斥하였다.⁽²⁴⁾

裁判所는 大陸棚이 어느 當事國에 屬하는가 하는 問題는 自然科學的인 方法에 依해서가 아니라 國際法의 標準에 依해야 한다고 斷定하고, 自然的 延長을 構成하는 物理的인 形態는 그 自體에 法的 權原이 있는 것이 아니라, 衡平的 解決을 위해서 考慮되어야 할 여러 事情 中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宣言하였다.⁽²⁵⁾

裁判所에 依하면, 法的 意味로서의 衡平은 正義 思想의 直接的인 發露이며 正義를 管掌 하는 것이 裁判所의 使命일진대, 本件에서도 衡平을 適用하여야만 하며, 더 나아가 衡平의 原理를 國際法의 一部分으로 適用하는 데 있어 衡平의 結果를 生産해 내도록 諸般 關係事情을 考慮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²⁶⁾ 裁判所는 또한 本件을 判決함에 있어 適用되어야 할 苛酷한 規則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雅量을 베푸는 式의 配分的 正義를 實現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²⁷⁾ 裁判所는 結論的으로 하나의 原理가 衡平한 것인가 어떤가는 그것을 適用하여 그 結果가 衡平的인 것인가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重要的 것은 結果이며 “原理가 結果에 從屬한다”고 宣言하였다.⁽²⁸⁾

衡平的인 結果를 效果的으로 誘導해 내기 위해 裁判部는 當該 海域의 諸般 關係事情을 考慮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裁判部는 “陸地가 바다를 支配한다”는 原理에 따라 海岸이 隣接 海底를 支配하는 權原을 賦與하는 決定的인 要素라고 宣言하고,⁽²⁹⁾ 距離 概念으로 兩國間에 重複 海域을 惹起시키는 限界點으로 튀니지아 海岸의 突出部인 라스 카보우디아와 리비아의 突出部인 라스 타조우라를 選定하고, 그 地點에서 各各 緯度와 經度를 따라 달리는 直線을 그어 그 以遠의 海域에 對해서는 하등의 考慮를 하지 않는다고 斷言하였다.⁽³⁰⁾

(23) Draft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 Doc. 62/L.78(Aug. 28, 1981), Art. 76.

(24) 리비아는 大陸棚이 地質學的으로 識別이 되면 境界 劃定은 單純히 이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우기고, 튀니지아는 衡平의 原理에 맞게 劃定하면 自然的 延長을 가장 잘 따르는 것이 된다고 하였으나, 裁判所는 이 두가지 主張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裁判所는 自然的 延長과 衡平의 原理가 平等한 것이 아니라는 點을 아울러 明白히 하였다. [1982 I.C.J.] Rep. 3, para. 44.

(25) *Id.*, paras. 67-68.

(26) *Id.* para. 71. [1969] I.C.J. Rep. 3, para. 88도 參照. 1937年 呂즈江水路轉換事件(Diversion of Water from the Meuse)에서 Manley O. Hudson 判事는 그의 個別意見을 통하여 衡平이 國際法의 一部임을 闡明하였다. P.C.I.J., Series A/B, No. 70, p. 76 參照.

(27) 이 點이 特別히 英美法에서의 衡平의 發達과 國際法에서의 衡平이 發達史의 側面에서 그 軌를 달리 하는 것이다. [1982] I.C.J. Rep. 3, paras. 70-71.

(28) 이러한 結果論的인 立場에서, 裁判所는 衡平의 原理란 抽象的으로 解釋될 수 없고, 衡平의 結果를 내는 데 適合한 原理와 原則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Id.* para. 70.

(29) 北海大陸棚事件에서도 裁判所는 이 點을 強調하였다. [1969] I.C.J. Rep. 3, para. 96.

(30) [1982] I.C.J. Rep. 3, para. 75.

裁判部는 이 區域 안에서 가장 重要한 要素는 튀니지아의 海岸線이 兩國 間의 國境線 終點에서 리비아의 海岸線과 거의 一直線을 이루면서 서쪽으로 달리다가 가베스灣의 서쪽 끝에서 갑자기 北東 方向으로 轉換한다는 點이며, 이를 實際로 境界劃定에 反影하였다.⁽³¹⁾ 튀니지아 海岸의 島嶼와 干出地를 包含하는 內水 海域은 歷史的 權原을 갖는 定着 漁業과 關聯하여 重要한 關係事情으로 認定되었으나, 그 權原이 認定되는 限, 裁判部는 그 以上 境界劃定에 反影하러 하지 않았다.⁽³²⁾ 그리고 比較的 近 심으로 튀니지아 南海岸에 本土와 거의 붙어 있는 저바島와, 가베스灣 北部에 있는 키케나 群島도 陸地와 11마일 밖에 안되며 經濟的으로도 重要한 것으로 認定받았으나, 前者는 그보다 더 重要한 關係事情의 存在로 境界劃定에 反影되지 않았고,⁽³³⁾ 後者는 그 效果가 半만이 認定되었다.⁽³⁴⁾

裁判所는 튀니지아가 1904年과 1951年 以來 一方的으로 宣言해 온 國境線 終點에서 正北으로부터 45° 角度를 갖는 直線과, 리비아가 1955年 石油 法規에서 一方的으로 規定한 國境線 終點에서 正北으로 달리는 62.9 海浬의 直線을, 各各 他方 當事國에 強要하는 것은 法의 一般原則에 어긋난다고 斷言하고 이를 排斥하였다.⁽³⁵⁾ 그러나 裁判所는 1919年 以來 當時 리비아의 占領國인 이태리와 튀니지아의 占領國인 프랑스 사이에 暫定協定(modus vivendi) 形式으로 認定되고, 그 후에도 상당한 期間 동안 尊重되어온 大략 北北東을 向하는 海岸線에 對한 垂直線을 本件 判決과 關聯이 있는 事情으로 斷定하였다.⁽³⁶⁾ 裁判所는 이 垂直線과 恰似한 線으로서, 1967年에 튀니지아가 그리고 1968年에 리비아가 各各 海底 石油資源 租讓權을 設定한 以來 事實上的 海洋境界線으로 尊重되어 온 國境線終點에서 正北으로부터 약 26°를 維持하며 垂直으로 달리는 直線을 境界劃定에 至大한 關係가 있는 事情으로 取扱하였다.⁽³⁷⁾

이어서 裁判所는 特別協定에서 要求한 두번째 項目인 實際的으로 適用할 劃定 方式을 提示하였다. 우선 裁判所는 等距離線 方式이 絕對性을 갖는 原理도 아니며 다른 方式에 比해 特別한 地位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宣言하고, 兩 當事國이 이 等距離線 方式을 援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裁判所가 提示하는 方式이 오히려 衡平의 原理에 合當한 것이 되므

(31) 이 點은 튀니지아의 리비아가 共同 重要한 關係事情으로 認定하였다. Tunisian Memorial, para. 8. 29. Libyan Counter-Memorial, paras. 500-505.

(32) 裁判所는 同 內水 海域이 重要 關係事情을 가지는 것으로 認定하였으나, 內水와 領海를 考慮 對象에서 除外하고 그 以遠의 海域만을 놓고 따지자는 튀니지아의 主張을 물리치고, 衡平의 한 機能으로서의 比例配分의 原理는 直線基線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海岸의 길이에 基準을 두는 것이라고 說明하였다. 따라서, 同 內水 海域의 定着性 漁業資源이 事實上 劃定에 影響을 미치지 못하였다. [1982] I.C.J. Rep. 3, paras. 79-104.

(33) 더 重要한 關係事項이란 1919年 以來 兩國 사이에 尊重되어 왔다는 26°線이다. *Id.* paras. 96, 117-27.

(34) *Id.* paras. 122-29.

(35) *Id.* paras. 91-92.

(36) *Id.* paras. 93-95.

(37) *Id.* para. 96.

로, 等距離線의 適用可能性을 考慮하지 않는다고 斷言하였다.⁽³⁸⁾

그 대신에 裁判所는 兩國이 事實上 尊重해 온 바 있는 海岸線의 一般의 方向에 對한 垂直線이 衡平의 原理에 맞는 것이라고 宣言하였다.⁽³⁹⁾ 이러한 垂直線 方式은 裁判所가 適用된 例를 들거나 그것이 갖는 便宜性 및 歷史的 發展過程을 說明하지는 않았으나, 國際聯合 國際法委員會가 1953년에 委屬한 專門家 委員會에서도, 隣接國 間의 海洋境界 劃定에서 等距離線이 不公平한 結果를 超來하는 경우가 많은 點을 考慮하여, 選擇의 理由로 國境線의 方向, 國境 終點이 닿는 海岸에서의 垂直線, 또는 國境線의 終點이 있는 海岸의 一般의 方向에 對한 垂直線을 境界線으로 할 것을 提示한 바 있었다는 點을 想起시켰다.⁽⁴⁰⁾

裁判所가 提示한 26° 垂直線은 튜니지아의 가베스灣의 海岸線이 北東쪽으로 方向을 轉換함에 따라 튜니지아에 너무 接近하여 不利하게 되므로, 裁判所는 이 海岸線의 北東 方向에 맞추어 方向을 轉換시키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베스灣의 西쪽 구석에서 北東으로 轉換한 海岸線의 一般의 角度는 正北으로부터 대략 42°이나, 轉換點에서 커케나 群島를 包含하는 直線을 그으면, 角度가 正北으로부터 대략 62°가 되므로, 境界 劃定時 島嶼의 價値를 半減하는 例가 간혹 있는 만큼, 이들 두 角의 差異를 半分하여 가베스灣의 北東으로의 方向 轉換點에서 52°를 維持하는 直線을 긋고, 이를 正東으로 緯度를 따라 나란히 移動시켜, 위에서 이미 提示한 國境線 終點에서 海岸線에 對한 垂直線과 連結되도록 한다는 것이다.⁽⁴¹⁾

IV. 評 釋

本判決은 第三次 國際聯合 海洋法會議에서 採擇된 大陸棚의 새로운 概念에 立脚하고 있다. 裁判所는 北海大陸棚事件에서 根本的인 原理로 君臨하던 自然的 延長論의 絕對性を 否認하고, 衡平의 原理에 따른 境界 劃定을 위해, 考慮되어야 할 要因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烙印을 찍고, 本件에 관한 限 適用될 수 없는 것이라고 宣言하였다.⁽⁴²⁾ 事實, 自然的 延長論이란 大陸棚에 관한 特루만 宣言에 基礎하여 演繹해 낸 理論으로서 北

(38) [1982] I.C.J. Rep. 3, paras. 47-56.

(39) 裁判所는 1966年 10月 21日 튜니지아가 設定한 租鎭區域의 東側 限界線과 리비아가 1968년에 設定한 租鎭 區域의 西側 限界線이 共히 26°線을 境界로 서로 맞붙어 있는 것에 注目했다. 이 線은 프랑스와 이데리가 1919年 以來 尊重해 온 北北東 方向의 線과 거의 一致한다. [1982] I.C.J. Rep. 3, paras. 93-96, 117-121.

(40) François, Second Report on the Regime of the Territorial Sea, UN Doc. A/CN. 4/61/Add. 1, Annex, at 6-7 (1953).

(41) 가베스灣 西쪽 구석에서 라스 카보우디아까지 그은 線이 北東 方向으로 달리는 海岸線의 一般의 方向을 나타내는 지는 疑問이다. 또한 커케나 群島의 效果를 半減하는 問題를 兩側이 論據로 삼은 일이 없는 데도 어떠한 根據에서 半減되어야 하는지 明確하지 않다. 同旨 Schwebel 判事의 個別意見, [1982] I.C.J. Rep. 3, at 99.

(42) [1982] I.C.J. Rep. 3, paras. 67-68.

海大陸棚事件에서 境界 劃定の 基本原理로 推仰되었다. 當時에 裁判所는 境界의 劃定은 他方 當事國의 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侵害함이 없이, 各 當事國에게 속하는 領土의 自然的 延長을 構成하는 大陸棚의 모든 部分을 各自에게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方式으로 하여야 한다고 宣言한 바 있다.⁽⁴³⁾ 이러한 絶對的 自然的 延長論은 깊은 海溝로 大陸棚이 明確히 斷切되지 않은 以上 境界 劃定에 事實上 適用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오스트랄리아·인도네시아 間의 大陸棚 境界 劃定에 관한 協定 등 極小數의 경우에 部分的으로 認定된 일이 있을 뿐이다.⁽⁴⁴⁾

裁判所는 正義를 管掌하는 裁判所로서 당연히 衡平을 適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正義라는 概念에 主觀的인 要素가 介在할 餘地가 많으므로, 普遍妥當性 있는 判決을 위해서는 裁判所가 適用해야 했던 것은 廣義의 衡平이 아니라 國際法의 一部로서의 衡平의 原理였다. 裁判所는 本件의 境界를 劃定함에 있어서, 무엇이 어떠한 根據에서 衡平의 原理가 되는지에 대해 充分한 吟味를 덜 한 것 같다.⁽⁴⁵⁾ 裁判所는 國境線 終點의 海岸線에 對한 垂直線이 어떠한 理由로 等距離線보다 나은지, 그리고 왜 그것이 지바島와 지지스突出部를 無視하고 海岸에서 상당한 距離에 이르러야 하는지, 또한 그 垂直線이 왜 가베스灣의 屈曲 方向을 따라 北東으로 轉換하여야 하고 어떻게 直線으로 뻗어야 하는지에 對해, 納得이 갈 만큼 說明을 하지 못한 것 같다.⁽⁴⁶⁾ 더구나, 陸地에서 11마일 거리에 있는 커케나 群島를 그 價値의 半만을 認定한 理由도 說明이 不足하다.⁽⁴⁷⁾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裁判所는 當事國이 要求하지도 않은 公平과 善(ex aequo et bono)에 依해 判決한 느낌이 든다.

裁判所는 이러한 理論上의 未洽을 補完하기 위해 結果論을 展開하였다. 裁判所는 “原理

(43) [1969] I.C.J. Rep. 3, para. 101 (C)(1).

(44)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Indonesia Establishing Certain Seabed Boundaries in the Area of the Timor and Arafura Seas, Supplementary to the Agreement of 18 May 1971, (Oct. 9, 1972), United Nations, National Legislation and Treaties Relating to the Law of the Sea, UN Doc. ST/LEG/SER. B/18, at 441 (1978).

(45) [1982] I.C.J. Rep. 3, para 71. 隣接國 間의 境界 劃定에서 直線을 使用한 例는 많다. 海岸의 一般의 方向에 垂直線을 긋는 方式은 1909年 Grisbadarna Arbitration에서 判示되었다. Grisbadarna Case (Norway/Sweden), Hague Ct. Rep. (Scott) 121 (Perm. Ct. Arb. 1909), *reprinted in* 4 Am. J. Int'l L. 226 (1910).

(46) [1982] I.C.J. Rep. 3, paras. 93-96, 117-121.

(47) 커케나 群島의 效果를 半만 認定한 根據는 그 群島의 位置와 그 周邊에 散在한 干出地를 考慮에 넣은 것이었다. 裁判所는 島嶼의 效果를 部分的으로 認定한 例가 많고, 그 한가지 方式이 그 效果를 半만 認定하는 것이리라 하였다. 1965年 12月 13日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間의 協約에서 이란의 키르島의 效果가 半만이 認定되었다. 이란이 그 섬의 完全한 效果를 主張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순히 이를 無視하려 하였으나 兩側이 半半 讓步하여 그 效果를 半만 認定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1982] I.C.J. paras. 122-29. 이란·사우디아라비아 劃定 關係는 570 UNTS 189; Limits in the Seas, No. 24 參照. 隣接國 間의 境界 劃定에서 島嶼의 價値를 半減하고 그에 따라 角度를 半分하는 例는 1977年 영국·프랑스 間의 大陸棚 仲裁裁判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仲裁裁判所는 英國의 실리島가 프랑스의 위장島보다 本土로부터 두 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여 실리島의 效果를 半減하여 大西洋 方面을 劃定하였다. 앞註(8) Anglo-French Continental Shelf Arbitration, paras. 244-254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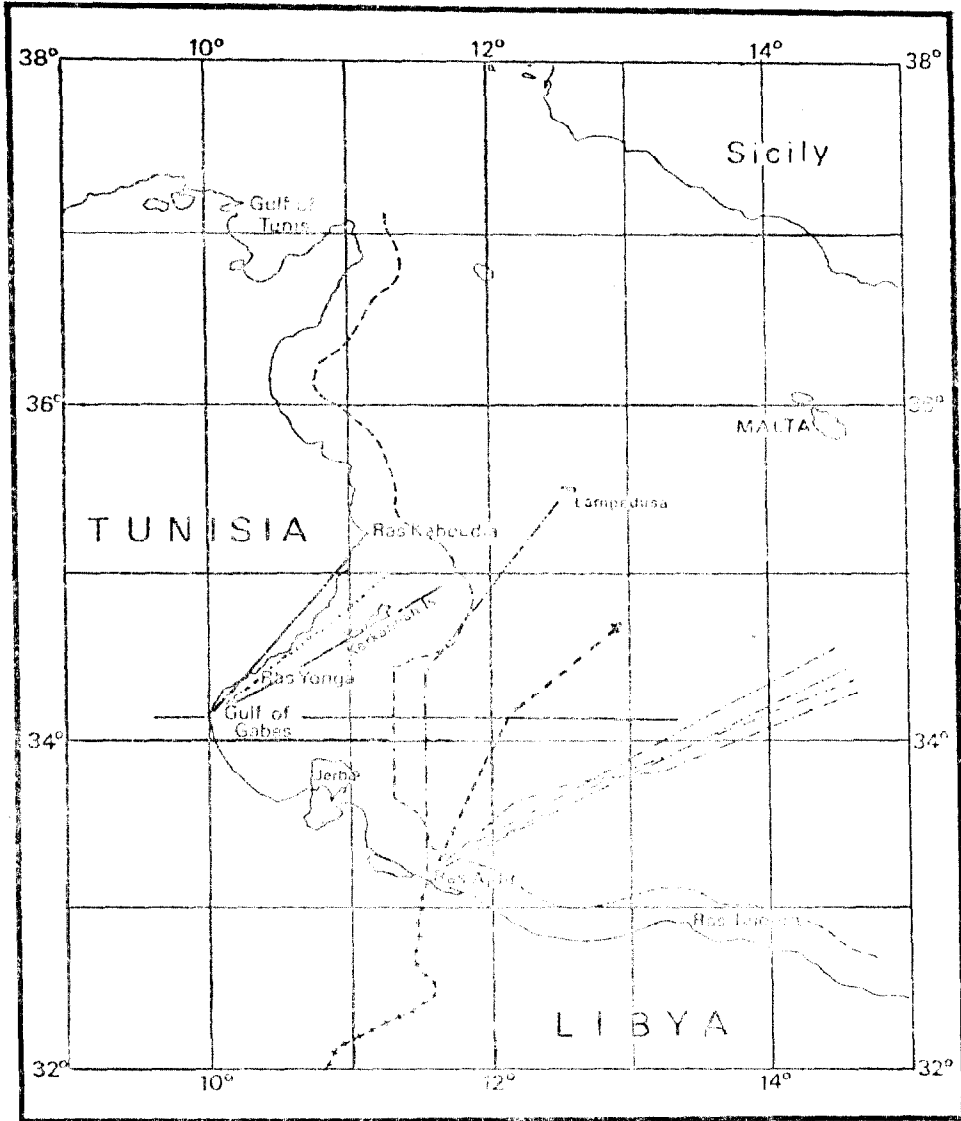
는 結果에 從屬한다”고 宣言하고, 裁判所의 主觀的인 判斷으로 公平하다고 言明하던 곧 그 提示가 原理가 되는 것으로 誘導하고 있는 듯하나, 司法的 紛爭의 解決은 特히 原理에 確固한 基盤을 두어야 한다.⁽⁴⁸⁾ 原理에 弱한 恣意的인 判決은 公平性 與否를 莫論하고 客觀性과 普遍妥當性이 적게 마련이며, 法的 混亂으로 말미암아 次後에 紛爭을 惹起시키기도 한다. 裁判所는 스스로 提示한 境界線을 海岸線의 길이에 따라 當該 海域의 面積을 比例 配分해 보고 衡平의 原理에 맞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이것은 面積에만 執着한 判斷으로, 本判決로 말미암아 石油資源이 埋藏되어 있는 紛爭 海域中 四分의 三이 石油 資源이 豊饒한 리비아에 돌아간 事實은 “原理는 結果에 從屬한다”는 結果論의 劃定 理論의 展開에 裁判所가 充實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結

튀니지아·리비아 간의 大陸棚에 관한 事件에 대한 裁判所의 判決은 諸般 關係事情을 考慮하여 衡平의 原理에 따라 境界 劃定을 해야 한다는 北海大陸棚事件의 判旨를 第三次 海洋法會議의 새로운 傾向에 立脚하여 解釋하고 適用하였다는 데 큰 意義가 있다. 그러나 北海大陸棚事件에서 裁判所가 境界 劃定の 根本原理로서의 自然的 延長論은 本判決로 말미암아 그 絕對性을 喪失하게 되었고, 衡平的 劃定을 위해 考慮해야 할 하나의 事情에 不過한 것으로 轉落하게 되었다. 1958年의 第一次 海洋法會議에서 採擇된 等距離線 方式도 隣接國 間的 劃定에 관한 限 더 이상 確立된 原則이 아니며 다른 方式에 비해 더 優越한 地位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再 闡明되었다. 裁判所는 “陸地가 바다를 支配한다”는 原理에 따라, 海岸線의 形態가 決定的인 要素임을 確認하고 어떠한 方式을 援用하든지 그 屈曲을 反影하고 길이에 比例하는 劃定을 하는 것이 隣接國 間的 境界劃定에 있어서 衡平의 原則에 合當한 것으로 判示하였다. 이러한 結果論의 論旨에는 다소 無理가 있는 것으로 思料되며, 劃定에 援用될 原理와 原則의 發展이 要望된다.

(48) [1982] I.C.J. Rep. 3, para. 70.

(49) *Id.* 130-31.



- 當事國이 主張하는 領海의 外的 限界
- 리비아가 主張한 境界線
- 튀니지가 主張한 境界線들
- · - · - 國際司法裁判所가 判示한 境界線